

[]배출시설등

[]방지시설

[]측정기기

자체 개선계획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제출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	처리기간	7일	
결정번호 제 호					
제출인	상호(사업장 명칭)		사업자등록번호		
	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		
	전화번호		이메일 주소		
	주소(사무실)				
	업종		주 생산품		
부적정 운영(예정)일					
개선완료(예정)일					
개선내용 및 부적정 운영내용	시설명 및 측정기기명	(시설번호)	규격	수량	[] 결함내용 [] 고장
오염물질등의 예상 배출농도 (측정기기가 정상가동된 3개월간의 평균배출농도)	(시설번호)				
	항목				
	농도				
폐수위탁처리	위탁처리방법	위탁업체명		위탁처리량	
				m³ / 일	
예상 평균 배출량	(가스)	m³/hr, (폐수)	m³/일	일일가동 예상시간	

[]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,
 []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
 따라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유역환경청장,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자체 개선계획서 가.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자체의 결함인 경우 1)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각 1부 2)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여 오염물질등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) 개선기간 중 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등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.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운영상의 문제인 경우 : 오염물질등의 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명세서 1부 2. 측정기기 자체 조치계획서 가.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·관리의 내용, 원인 및 조치명세서 1부 나. 자동측정기기의 운영·관리 진단계획서 1부 다. 자가측정 계획서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

